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허가의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규제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을 보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 인력 1명(7급 1명)과 지역사무소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127”을 “128”로 하고, 일반직 계 “126”을 “12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20”을 “12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일반직 계 및 4급 이하 “39”를 각각 “38”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27</u>	<u>128</u>	+1
·	·	·	
·	·	·	
일반직 계	<u>126</u>	<u>127</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20</u>	<u>121</u>	+1
·	·	·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3]

지역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39</u>	<u>38</u>	-1
일반직 계	<u>39</u>	<u>38</u>	-1
4급 이하	<u>39</u>	<u>38</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3